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627
----------	-----

2021. 1. 28.(목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오영탁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1년 1월 11일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1월 12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1월 20일

-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오영탁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충청북도 홍보대사의 임무, 위촉, 책무, 예우 및 보상 등 충청북도 홍보대사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홍보대사 임무의 명확화(안 제2조)
- 분야별 홍보대사 임기의 명확화(안 제3조제4항 단서)
- 홍보대사의 책무를 규정(안 제5조)
- 홍보대사에 대한 예우 및 보상의 명확화(안 제7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남범우)

- 이 개정조례안은 현재 충청북도의 홍보대사는 도민 홍보대사와 각 실과에서 각종 행사 시 위촉하는 홍보대사로 구분할 수 있으나, 조례는 이러한 홍보대사의 구분 없이 임기, 보상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례상 구분되는 조항이 필요함.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에서는 홍보대사 임무내용을 명확화 하였고,
- 안 제3조4항에서는 홍보대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는 바, 각 실과에서 연예인 등의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5조에서는 홍보대사의 품위유지, 홍보 적극동참, 명예훼손 금지, 개인 영리추구 금지 등 홍보대사의 책무를,
- 안 제7조에서는 홍보대사의 예우 및 보상에 대해
 -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, 홍보대사 임무 수행 시에는 의견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도록 하였고,

- 홍보대사의 경우 여비 및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, 각 실과에서 위촉하는 홍보대사는 활동비 및 홍보물 제작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보상에 대해 명확화 하였음.

○ 이 조례개정안은 홍보대사 운영에 대한 업무내용의 구체화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의안번호	제 627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오영탁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1년 1월 11일

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오영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2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1월 11일

발 의 자 : 오영탁, 임영은, 이옥규,
박상돈, 심기보, 육미선,
연철흙

1. 개정이유

- 충청북도 홍보대사의 임무, 위촉, 책무, 예우 및 보상 등 충청북도 홍보대사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홍보대사 임무의 명확화(안 제2조)
- 분야별 홍보대사 임기의 명확화(안 제3조제4항 단서)
- 홍보대사의 책무를 규정(안 제5조)
- 홍보대사에 대한 예우 및 보상의 명확화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관련부서 협의 : 공보관과 협의함.
- 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- 라. 입법예고 : 2020. 12. 24. ~ 2021. 1. 3.

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임무) 충청북도 홍보대사(이하 “홍보대사”라 한다)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를 알리기 위한 국내·외 활동
2. 주요 도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
3. 각종 축제 및 문화·관광 홍보에 관한 활동
4.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
5. 그 밖에 도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부합되는”을 “부합하는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”를 “인정되는 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책무)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도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, 도의 홍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.

② 홍보대사는 도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,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고, 직위를 이용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제6조(운영) ① 홍보대사 관련 업무 총괄은 공보관이 담당하되,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공보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. 다만,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·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.

② 공보관은 홍보대사의 위촉 등의 현황을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7조(예우 및 보상)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, 각종 도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수행 시에는 의견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.

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및 홍보물 제작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임무) (생략)</p> <p>1. <u>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2.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<u>사항</u></p> <p>3. <u>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</u></p> <p>4. <u>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신 설></p>	<p>제2조(임무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<u>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를 알리기 위한 국내·외 활동</u></p> <p>2. <u>주요 도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</u></p> <p>3. <u>각종 축제 및 문화·관광 홍보에 관한 활동</u></p> <p>4.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<u>활동</u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5. <u>그 밖에 도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</u></p>
<p>제3조(위촉)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자</u>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</p> <p>1. 도의 위상제고에 <u>부합되는</u>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</p> <p>2. (생 략)</p> <p>3. 그 밖에 도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<u>도지사가 인정하는</u></p>	<p>제3조(위촉)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사람</u>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</p> <p>1. 도의 위상제고에 <u>부합하는</u>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그 밖에 도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<u>인정되는 사람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 data-bbox="209 282 767 387"><u>에서</u> 여비와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 data-bbox="188 499 288 544">(신설)</p>	<p data-bbox="836 282 1394 450"><u>도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 수행시에는 의전을 갖추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.</u></p> <p data-bbox="799 499 1394 958">② <u>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및 홍보물 제작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
<p data-bbox="169 987 767 1093"><u>제7조(시행규칙)</u>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 data-bbox="799 987 1394 1093"><u>제8조(시행규칙)</u>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비용추계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

○ 사 유

-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